

「평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0년 01월 20일, 이명순 의원
- 회부일자 : 2020년 02월 04일 회부
- 상정일자 : 제252회 평창군의회(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2020년 02월 05일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이명순 의원)

가. 제안이유

입법예고 예외 사항을 기술하여 표현함으로서 군민의 알권리를 보호하고자 하며, 군민의 행정참여인 입법예고제의 본래 취지에 맞추어 최소한의 입법예고 기간을 보장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가. 법조문만을 규정한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 단서 표현을

서술적으로 기술(안 제3조)

나. 입법예고기간 예외사유인 특별한 사정을 특정하여 기술하며,

예고기간 20일 미만으로 단축하여 할 수 있음을 10일 이상

20일 미만으로 개정(안 제6조)

다. 부서명에서 직무중심명칭으로 변경하고자 기획실장을

법제업무 담당부서의 장으로 변경(안 제6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 최순철)

- 본 조례안은 군민의 행정참여인 입법예고제의 본래 취지를 살려 최소한의 입법예고 기간을 보장하고자 함이 조례개정의 취지가 있으며
- 조례 개정의 주요내용은
법조문만을 규정한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 단서 표현을 서술적으로 기술하며,
안 제6조에서는 입법예고기간 예외사유인 특별한 사정을 구체적으로 규정, 예고기간 20일 미만으로 단축하여 할 수 있음을 “10일 이상 20일 미만”으로 개정(안 제6조), 부서명에서 직무중심명칭으로 변경하고자 기획실장을 “법제업무 담당부서의 장”으로 변경(안 제6조)하는 내용입니다.
- 입법예고는 자치법규안의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예고하고, 공개하여 군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입법 내용에 반영함으로써 입법과정에 대한 군민의 참여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실시되는 것으로, 행정절차법에 그 법률적 근거를 두고 있으며 자치법규 입법예고기간은 20일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행정절차법 제43조(예고기간)

입법예고기간은 예고할 때 정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40일(자치법규는 20일)이상으로 한다.

행정절차법령과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0조제4항에 따르면,

「행정절차법」 과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대해서는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이와 관련하여 특별한 사정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우리군 「평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6조를 살펴 볼 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기획실장과 협의하여
 20일 미만으로 입법예고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는** 규정은
 부서장의 판단으로 경우에 따라서는 입법예고를 하지 않는 사항도
 있을 수 있는 것으로
 이는 입법예고 제도의 취지를 고려해 볼 때,
 입법예고의 생략 및 단축은 예외적으로 신중하게 허용되어야 할 것인 점,
 법령안의 입법예고와 관련하여 최단 입법예고 기간 단축하려는 경우
 법제처장과의 협의를 거치도록 하는 부분에서
 자치법규인 경우 법제처장과 같은 역할이 없다는 점 등을 참고해 볼 때,
 입법예고 최소한의 기간보장으로서는
“20일 미만”을 “10일 이상 20일 미만”으로의 개정은 필요하다 하겠습니까.
 또한, 단축할 수 있는 사유인 **특별한 경우**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남용되는 사례가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 최근 평창군 조례안 입법예고 기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창돌문화체험관 관리운영 조례안: 2019. 10. 29. ~ 11. 03.(6일간)
 평창군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2019. 10. 26. ~ 10. 28.(3일간)

○ 평창군 포함 11개 시군의 강원도 내 입법예고관련 조례는
 우리군과 비슷하게 규정되어 있으나
 이는 전국적으로 10일 이상 20일 미만의 기간을 두어
 개정안을 따르고 있는 것과 대조되는 것이라 할 수 있으며
 또한, 특별한 경우를 구체적으로 규정함은
 법제처의 의견제시 사례에서 조례 입법예고 기간 단축에 대한
 바람직한 경우로서 규정한 사항을 참고하여

개정에 반영한 사항이기도 합니다.

○ 조례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됩니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의결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붙임】 평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평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평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본문 중 “**군수 이**”를 “**군수**”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 단서의 규정**”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며,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신속한 군민의 권리 보호 또는 예측 곤란한 특별한 사정의 발생 등으로 입법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
2. 상위 법령 등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
3. 입법내용이 군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경우
4. 단순한 표현·자구를 변경하는 경우 등 입법내용의 성질상 예고의 필요가 없거나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예고함이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제6조 중 “**20일 미만**”을 “**10일 이상 20일 미만**”으로, “**기획실장**”을 “**법제업무 담당부서의 장**”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 중 특별한 사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공익을 위하여 입법을 긴급하게 추진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상위 법령과 자치법규의 시행 시기를 일치시켜야 하는 경우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3조(자치법규안 입법예고) ① 평창군수(이하 "<u>군수</u>"이라 한다)가 자치법규를 입법하고자 하는 경우 이를 예고하여야 한다. 다만, 「<u>행정절차법</u>」 제41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법예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p> <p><u><신 설></u></p> <p><u><신 설></u></p> <p><u><신 설></u></p> <p><u><신 설></u></p> <p><u><신 설></u></p>	<p>제3조(자치법규안 입법예고) ① - ----- "<u>군수</u>"----- ----- ----- --. --- <u>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u>----- ----- -----.</p> <p><u>1. 신속한 군민의 권리 보호 또는 예측 곤란한 특별한 사정의 발생 등으로 입법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u></p> <p><u>2. 상위 법령 등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u></p> <p><u>3. 입법내용이 군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경우</u></p> <p><u>4. 단순한 표현·자구를 변경하는 경우 등 입법내용의 성질상 예고의 필요가 없거나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u></p> <p><u>5. 예고함이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u></p>

② (생략)

제6조(예고기간) 입법예고기간은 20일 이상으로 하되, 제3조제1항에 의하여 입법예고를 생략하고자 하거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입법예고기간을 20일 미만으로 단축하고자 하는 때에는 기획실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② (현행과 같음)

제6조(예고기간) -----

----- 10일 이상 20일 미만-----
법제업무 담당부서의 장-----.

② 제1항 중 특별한 사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공익을 위하여 입법을 긴급하게 추진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된 경우
2. 상위 법령과 자치법규의 시행 시기를 일치시켜야 하는 경우